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시 사업규모의 격차 고려〉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1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7.
- (3)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 요소로 사업능력 외에 사업규모의 격차를 추가하면서, 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 격차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제외) ① (생략)	제3조(적용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u>사업능력의</u> 격차	3. ----- ----- <u>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u>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 격차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u>
	1. <u>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u>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현행	개정안
<신설>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품업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현행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연간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거나 매장을 임차한 자를 각각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으로 정의함¹⁾.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그런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³⁾

- 사업자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시장지배적사업자 역시 동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⁵⁾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 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3) 「유통=갑·납품=을?...대기업까지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머니투데이, 2025. 4. 7.)

4) 이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는 규모와 시장 지배력이 다양한 납품업자들을 상대하게 됨.

5)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로부터

□ 이에 개정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 규모의 격차를 추가하고,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기업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납품업체등은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동 법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등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 목적⁶⁾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낮은 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납품업자등을 동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납품업자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⁷⁾.

-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영남 지역 대표 슈퍼 탐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6.)

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교섭력의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는데, 대기업인 납품업자등은 독자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수단의 적용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자들에 비해 한층 유리한 추가적인 거래조건을 이끌어냄으로서 중소기업자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유지 내지 더욱 확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의견(이기중,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p.85~p.88, 2020. 12.)

6호(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 지위를 가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⁸⁾은 ‘행위 주체의 대기업성’
 이나 ‘거래상대방의 중소기업성’ 또는 ‘행위주체와 거래상대방 사
 이의 상당한 경제력 차이 또는 본질적 협상력 차이’를 적용요건
 으로 설정하고 있음.⁹⁾¹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서울고등법원 2022누36102 판결 내용 중 일부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

□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는 유통시장과 제조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한 사업자들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자 규모만으로 거래상 우월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법원은 특정 업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거나 매출 규모가 큰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유통시장에서 가지는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사업능력의 격차를 매출액 규모 등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음¹¹⁾.

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대법원 2018두65071 판결(2021. 11. 25. 선고)

- 원심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인 주식회사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이하 ‘주식회사 농심 등’이라고 한다)로서는 원고들과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으며, 주식회사 농심 등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농심 등이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농심 등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주식회사 농심 등 사이의 거래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3401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49980 판결)

- 원고 등 4개사의 납품업자 중에는 매출규모가 원고 등 4개사보다 크고, 전체 매출 중 원고 등 4개사와 관련된 매장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납품업자는 재고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특정 업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거나 매출규모가 큰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아울렛 시장에서 가지는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3090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023두48339 판결)

- 다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능력의 격차를 그 매출액의 규모 등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P와 R는 원고에게 직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하고 있음에도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다른 납품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종업원을 파견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과 재질 등을 변경하여 단가를 낮춘 원고 전용모델을 납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상품의 현실적인 판매에 관하여는 원고의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거나 원고의 유통망 활용이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편, 개정안 제3조제4항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사업규모나 시장 점유율은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 유통시장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는 주된 고려사항으로 보기 곤란하고, 대기업 납품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오히려 중소 납품업자 보호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